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1. 관련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505('20.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통보)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 상향(경계→심각, 2.23)에 따라,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4단계 중 1단계까지 모두 해제) 시까지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적용 됩니다.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보수 교육 : 이수 기간 유예

-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정교육 이수 가능
 -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3개월 후라도 교육 일정 상(수강인원 제한 등) 3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예

나.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교육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집체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인정

3.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등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족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끝.



수신자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주무관

김성찬

행정사무관

김하연

과학기술안전
전결 2020.3.12.
기반팀장 조현숙

협조자

시행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 (2020. 3. 12.) 접수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857 팩스번호 044-202-6029 / kimsc93@korea.kr / 대국민 공개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 연구기관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연구실” 이란 대학 · 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 장비 ·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 실습실 ·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 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 · 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 이란 대학 · 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 ·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 관리 · 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 · 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 · 대학생 ·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제20조(교육 ·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 · 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 · 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 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4.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 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1576호, 2021. 3. 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 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1. 신규 교육 · 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 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근로자가 아닌 사람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2. 정기 교육 · 훈련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저위험연구실)		연간 3시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 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6시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다. 가,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위험연구실)		반기별 3시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3.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 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중부대학교 내의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부대학교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8 장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별표6」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안전관련 기술정보와 안전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정기교육 실시 후 정기교육 내용 및 정기교육 참석자를[별지서식9]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교육실시 신규교육 내용 및 신규교육 참석자 명단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출입제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연구실을 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실 책임자에게 임시 출입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임시출입승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